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21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정춘생·서왕진·박은정
김준형·차규근·신장식
강경숙·황운하·김선민
이광희·이수진·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제6항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32조 본문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⑤ (현 행과 같음) <u>⑥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 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u>
<u>⑥·⑦</u> (생 략)	<u>⑦·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제32조(양벌규정) ----- ----- ----- ----- ----- ----- ----- ----- ----- -----

